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가단7172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7. 12. 6.(피고 1.에 대하여) 2018. 7. 4.(피고 2.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8. 8. 2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8,71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7. 7. 8.까지연 6%, 그 다음 날부터 2017. 10. 16.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0. 26.자 증여계약은 48,710,19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9.부터 2017. 7.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 A와 피보험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가입금액 49,681,670원, 보험기간 2016. 9. 29.부터 2022. 10. 28.까지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 A는 2016. 9. 29.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71,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7. 2. 28.경 대여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8.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보험금 48,710,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1985. 1.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는데, 피고 A는 2004. 5. 17.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7. 피고 B에게 2016. 10.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들은 2017. 3. 3. 협의이혼의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16. 11.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나 1, 2,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48,71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7. 7.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7. 10.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주식회사 하나 은행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가액배상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금액 48,710,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B는 피고 A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8. 피고 A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보험금 48,710,1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6. 10. 26.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7. 6. 8.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 A는 이 사건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2. 28.경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나아가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2017. 6. 8. 원고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대법원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6, 7호증, 을나 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법원행정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1) 피고들은 1985. 1. 22. 혼인신고를 마치고 30여 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왔고, 자녀 2명을 양육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10. 27.로부터 1달 정도 지난 2016. 11.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호협2643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2017. 1. 17. 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2017. 3.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협의이혼의 신고를 마쳤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45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피고 A의 정년퇴직이 임박함에 따라 퇴직연금 월 2,144,380원(퇴직수당 5,993,263원¹⁾)을 조만간 수령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 A는 농협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18,000,000원,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32,000,000원, 제이티저축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34,949,000원, KB국민카드에 대한 카드대출채무 1,725,000원,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15,200,000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대출채무 48,710,19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4,000,000원 합계 384,584,190원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직후인 2016. 11. 28. 피고 A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12. 피고 A의 채권자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A를 채무자로 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1. 15. 말소되었는데, 이는 피고 B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으로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말소한 것이다. 피고 A를 채무자로 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무렵 모두 변제되었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대신 피고 A의 퇴직연금 및퇴직수당은 전액 피고 A가 수령하기로 재산분할하였다. 그런데 피고 A가 수령할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가정하여 2017. 10.경 기준 현가 계산할 경우에는 116,098,073원²⁾에 지나지 않지만, 여명종료일까지 매월 지급받을 경우 약 566,116,320원에 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에 비하여 피고 A가 분배받는 퇴직연금의 가치가 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

별지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파트 제2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2-9-9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9층 제901호 116.76㎡

대지권의표시

토지의표시 : 1. 서울 서대문구 대 3072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31460.1분의 55.40

22

1)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참조). 그런데 을나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피고 B와의 혼인기간 중인 1997. 11. 14.부터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퇴직연금 등 채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퇴직연금 등 채권 전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A의 예상 여명종료일인 2039. 4. 14.까지 지급받을 매월 2,144,380원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월 644,380원을 월 12분의 5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016. 10. 기준 현가로 계산한 금액임